포스빌 운영지침

제정 2023. 2.27
개정 2024. 3. 1
개정 2025. 4. 1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포스빌 세부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대상자 및 우선순위) 포스빌 단독세대의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3인1실의 경우는 생활관운영팀에서 정한다.

① 신진연구자(Post-doc, 연구교수[박사학위 후 7년이내])는 입주를 허용한다.

1.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신분증 사본

② 비전임교원: 대우교수>조교>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기금교수

1. 전일제 교원은 입주를 허용한다.
2. 전일제 교원이 아닌 경우 제5조 ②항을 통해 결정한다.
3. 제출서류
   - 주임교수/소장/원장 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 근로계약서
   - 활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③ 대학원생

1. 기본적으로 3인1실 입주를 허용하며 단독세대는 기혼자에 한한다. 입주는 제5조 ②항을 통해 결정한다.
2. 제출서류
   - 주임교수/원장 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 지도교수 추천서
   - 재학증명서
   - 결혼증명서
   - 신분증 사본

④ 대학부설 및 입주 연구소 연구원(연구행정원 제외), 직원(정규직 트랙 연봉 계약

직)

1. 기본적으로 3인1실 입주를 허용하며 단독세대는 기혼자에 한한다. 입주는 제5조 ②항을 통해 결정한다.
2. 대학부설 및 입주 연구소 연구원 제출서류
   - 주임교수/소장/원장 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 근로계약서
   - 결혼증명서
   - 신분증 사본
3. 직원(정규직 트랙 연봉 계약직) 제출서류
   - 행정부서장 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 근로계약서
   - 결혼증명서
   - 신분증 사본

⑤ 그 외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5조 ②항을 통해 결정한다.

1. 제출서류
   - 주임교수/소장/원장 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 근로계약서
   - 활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제3조(입주제한) 포항지역 내 대학 또는 기업 등에서 은퇴한 희망자와 기본 주민등록 소재지가 포항인 희망자는 입주를 제한한다.

제4조(거주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로 거주연장 희망시 청원을 통해 2년씩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제5조(포스빌운영위원회) 포스빌 운영과 관련하여 포스빌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구성은 입학학생처장(위원장, 당연직), 교무처장(당연직), 연구처장(당연직), 행정처장(당연직), 생활관운영팀장(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포스빌 주요 정책사항 결정
2. 입주 대상자 심의
3. 기타 포스빌 관련 주요사항 등

제6조(재배치) 3인1실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관운영팀에서는 입주자 호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7조(거주자의 의무) 거주자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 중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15일 이내 생활관운영팀에 고지하고 계약시작일 7일 이내 신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분변동에 따라 제2조에 있는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거를 원칙으로 하되, 제5조 2항에 의거 입주대상자 심의를 받아야 함
2. 입주시 1주일 이내 시설물 Check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되었으면 바로 원상복구 해야 함
3. 본인 희망 시 실내 도배, 장판, 형광등 등의 시설물은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시설물은 퇴거 시 철거할 수 없음. 또한, 생활관운영팀에서 제공하는 가전, 가구 및 비품 일체는 임의로 교체, 처분할 수 없으며 확인되는 즉시 본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4.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및 안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세대내 청소는 입주자가 실시하고, 퇴거시 개인물품이 없어야 함
6. 3인 1실의 경우 기존 거주자 중 1인 퇴거 시 생활관운영팀에서 공용공간(거실/욕실/베란다 등)을 점검하여, 상태 불량 시 모든 거주자에게 청소 비용을 균등 부과함

제8조(강제퇴사)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생활관운영팀에서는 강제퇴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본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형사사고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동거 또는 재임대시
3. 이용료 및 유틸리티비를 2개월 이상 미납 또는 기타 거주와 관련하여 생활관운영팀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애완동물 반입 시
5. 실내흡연 확인 시
6. 2회 이상 소음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가. 소음의 기준(개정: 2025 .4 .1.)

(단위 : dB(데시벨))

소음의 구분		소음의 기준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1)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3) 등가소음도: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을 평균 낸 소음도

(4) 최고소음도: 특정 시간 동안 소음 발생 시 측정한 소음도 중 최고값을 의미하는 소음도

7. 2회 이상 쓰레기(일반/음식물) 무단투기가 확인될 경우

8. 2회 이상 호실 내/외부 공용공간에 개인물품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제9조(예치금) 입주시 아래와 같이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금액

- 단독세대: 1,500,000원
- 3인1실: 500,000원

② 예치금은 호실 청소 등 퇴거절차 및 퇴거정산 끝난 후에 지급된다. 다만 최소 입주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치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③ 강제퇴사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확정되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